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93호

2015. 9. 21(월)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5 - 1113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5 - 1113호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9일

남 원 시 장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 「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 등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1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자치입법 개별 개정에 따른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 개선과제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

-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 (안 제7조제6항)

나.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료급여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8조제1항)

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 남원시 노인복지관을 위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

라.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4조)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그 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하여 관련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안 제3조제2항)

바.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6조)

-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관리위탁 방법 및 횟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도록 위탁갱신 횟수를 규정하고 2회 이상 갱신시 평가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사.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휴양림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안 제22조제1항)

아. 「남원시 주차장 조례」(안 제8조)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의 범위를 일탈한 용도변경 금지 규정 삭제(안 제16조제3항)

자.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9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 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개정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성별영향평가 : 여(특이사항 없음, 2015. 9. 19.)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 연락처 : 전화 063-620-6092 / FAX 063-620-670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단서 중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의하며 보육정보센터”를 따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있으며, 허가기간은 3년이 내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을 받은 자의 운영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제8조(남원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7조(위탁운영) ①~ ⑤ (생략)</p> <p>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제7조(위탁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 --.</p>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p>제8조(독촉 등) ① 대불금상환의 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독촉 등) ① ----- ----- ----- 6개월 이내 ----- ----- 따 라 ----- -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장 보육정보센터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8조(설치) ①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② -----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제19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며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교육실을 둔다.

제20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략)

제19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법-----
-----따
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

-----.
1. ~ 7. (현행과 같음)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생략)
<신 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제17조(사용허가) ① -----
----- 범위에서-----

선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할 수 있
으며, 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
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
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
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사
용허가 및 위탁운영을 받은 자
의 운영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
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
장)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
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

<삭제>

- 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
- 3. 위험물 및 악취물을 반입하
거나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
을 방치하는 자
-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
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조
수류를 포획하는 자
- 5.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② (생략)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
 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
 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
 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
 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
 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한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
 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
 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
 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
 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③ (현행과 같음)